

예산총칙

2022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009,267,139	120,278,014
일반회계	3,444,970,600	103,349,118
특별회계	564,296,539	16,928,896
공기업특별회계	474,380,967	14,231,42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93,711,093	5,811,33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80,669,874	8,420,096
기타특별회계	89,915,572	2,697,467
교통사업 특별회계	28,386,083	851,582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506,299	75,189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255,892	7,677
대지보상 특별회계	572,497	17,175
기반시설 특별회계	105	3
수질개선 특별회계	31,759,490	952,785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3,229,795	96,894
균형발전특별회계	21,117,844	633,53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078,450	32,354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1,009,117	30,274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5,403,039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41,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